

행정법총론

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 ③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해설 ③이 정답이다. ①,②,④는 옳다.

- ③ 대법원은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본다(대판 1994. 3. 22. 93 다 56220).

☞ 통합행정법 153쪽 판례 참조

2.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침해는 위법·유책이다.
- ④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분리이론과

☑ 헌법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경계이론

- (1) 재산권의 내용(1·2항)과 공용침해(제3항)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며,
- (2) 내용규정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다.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

(1) 독일의 통상재판소= 수용유사적침해 수용적침해

+

(2) 우리 대법원 + 간접적용설을 취할때

2. 분리이론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 (1) 공용침해(수용·사용·제한)= 제3항
- (2) 재산권의 내용·한계설정(제2항)이
- (3) 분리된다.

제2항의 경우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구제되어야 하되,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헌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

- (1) 독일헌법재판소=자갈채취판결
- (2) 우리헌법재판소 = 개발제한구역사건

☞ 통합행정법 490쪽 참고

①은 수용적침해에 관한 설명이다.

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 ④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이 정답이다.

- ① 전자공청회(행정절차법 제38조의2)[본조신설 2007.5.17]
- ①항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통합행정법 317쪽 참조

4.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 ③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해설 ③이 정답이다.

- ③ 대판 2000, 2. 11, 99두7210.

☞ 통합행정법 265쪽 참조

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 ②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 ③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해설 ③이 정답이다.

- ③ 철거할 건축물에 다액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건축주가 다액에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축물철거계고 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대판 1989. 10. 10, 88누11230).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 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 6. 23, 98두3112).

☞ 통합행정법 383쪽 참조

6.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이다.
- ②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 ④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 ④ 서울교육대학의 학장이 학칙위반자인 재학생에게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원고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1. 11. 22. 91누2144).

☞ 통합행정법 383쪽 참조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 ②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 ④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대판 2006.3.9. 2004다31074).

☞ 통합행정법 421쪽, 593쪽 참조

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 ②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④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해설 ②가 정답이다.

- ② 행위시법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처분후 신법이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 ④ (1)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2)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 7. 26, 2001두11168).

☞ 통합행정법 95쪽, 96쪽 참조

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다.
- ④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 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해설 ③이 정답이다.

- ③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2. 2. 8. 2000두4057).
- ②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7. 3. 14. 96누16698).

☞ 통합행정법 84쪽, 91쪽, 109쪽, 178쪽 참조

1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내에 고발할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 ②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 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 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다

☞ 통합행정법 422쪽 참조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③ 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해설 ②가 정답이다.

- ② 판례와 다수견해인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로 부담의 경우와 법령의 근거 또는 법규나 행정처분의 성질상 사후부관이 예상되거나, 행정행위 당시에 유보하였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이 인정된다.

☞ 통합행정법 235쪽 참조

1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것은?

-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이 정답이다.

- ①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내용이다.
- ②와 같은 규정은 없다.
- ③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 +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입력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통합행정법 302쪽 참조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는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A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

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④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서 부산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 부산개별공시지가사건에서)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면 현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룰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8. 3. 13, 96누 6059).

☞ 통합행정법 251쪽 참조

1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 ②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해설 ①이 정답이다.

-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다르다. 참고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항 를 소개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통합행정법 460쪽 참조

1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②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 확인청구 도 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 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④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해설 ①이 정답이다.

- ①은 판결의 형성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결의 형성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무효 등 확인소송 등에 준용된다. 기각판결의 경

우 형성력의 적용은 없다.

☞ 통합행정법 581쪽 참조

16.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 신청권이 있어야한다
-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
- ③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인정 하고 있다.
-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설 ②가 정답이다.

- ②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제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제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 11. 22. 2000두9229).
- ④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8. 2003두1806).

☞ 통합행정법 126쪽, 555쪽 등 참조

17.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지방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

상 하자로 위법하다.

해설 ①이 정답이다.

-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 11. 28. 99두3416).
-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07. 9. 21. 2006두20631)

☞ 통합행정법 298쪽 596쪽 참조

18. 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③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④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 통합행정법 557쪽 참조

1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헌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는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증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④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해설 ②가 정답이다.

- ②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 통합행정법 253쪽 참조

“고 규정한다.

☞ 통합행정법 338쪽 참조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EH는 일부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④가 정답이다.

-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2조). **정보공개심의회는 동법 제12조의 내용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해설 및 정답

1.

해설 ③이 정답이다. ①,②,④는 옳다.

③ 대법원은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본다(대판 1994. 3. 22. 93 다 56220).

☞ 통합행정법 153쪽 판례 참조

2.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분리이론과

☑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경계이론

(1) 재산권의 내용(1·2항)과 공용침해(제3항)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며,
(2) 내용규정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다.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

(1) 독일의 통상재판소= 수용유사적침해 수용적침해

+

(2) 우리 대법원 + 간접적용설을 취할때

2. 분리이론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1) 공용침해(수용·사용·제한)= 제3항

(2) 재산권의 내용·한계설정(제2항)이

(3) 분리된다.

제2항의 경우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구제되어야 하되,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헌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

(1) 독일헌법재판소=자갈채취판결

(2) 우리헌법재판소 = 개발제한구역사건

☞ 통합행정법 490쪽 참고

3.

해설 ①이 정답이다.

① 전자공청회(행정절차법 제38조의2)[본조신설 2007.5.17]

①항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통합행정법 317쪽 참조

4.

해설 ③이 정답이다.

③ 대판 2000, 2. 11, 99두7210.

☞ 통합행정법 265쪽 참조

5.

해설 ③이 정답이다.

③ 철거할 건축물에 다액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건축주가 다액에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 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 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건축물철거계고 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대판 1989. 10. 10, 88누11230).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 상에 신축

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 6. 23, 98두3112).

☞ 통합행정법 383쪽 참조

6.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서울교육대학의 학장이 학칙위반자인 재학생에게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원고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1. 11. 22. 91누 2144).

☞ 통합행정법 383쪽 참조

7.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 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대판 2006.3.9. 2004다31074).

☞ 통합행정법 421쪽, 593쪽 참조

8.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행위시법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불이 익처분후 신법이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④ (1)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2)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 7. 26, 2001두11168).

☞ 통합행정법 95쪽, 96쪽 참조

9.

해설 ③이 정답이다.

③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2. 2. 8. 2000두4057).

②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7. 3. 14. 96누16698).

☞ 통합행정법 84쪽, 91쪽, 109쪽, 178쪽 참조

10.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 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다

☞ 통합행정법 422쪽 참조

11.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판례와 다수견해인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사후부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로 부담의 경우와 법령의 근거 또는 법규나 행정처분의 성질상 사후부관이 예상되거나, 행정행위 당

시에 유보하였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이 인정된다.

☞ 통합행정법 235쪽 참조

12.

해설 ①이 정답이다.

①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내용이다.

②와 같은 규정은 없다.

③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 +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력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통합행정법 302쪽 참조

13.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서 부산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 부산개별공시지가사건에서)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면 현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룰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8. 3. 13, 96누 6059).

☞ 통합행정법 251쪽 참조

14.

해설 ①이 정답이다.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다르다. 참고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항 를 소개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통합행정법 460쪽 참조

15.

해설 ①이 정답이다.

①은 판결의 형성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결의 형성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무효 등 확인소송 등에 준용된다.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의 적용은 없다.

☞ 통합행정법 581쪽 참조

16.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제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제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 11. 22. 2000두9229).

④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8. 2003두1806).

☞ 통합행정법 126쪽, 555쪽 등 참조

17.

해설 ①이 정답이다.

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 11. 28. 99두3416).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2007. 9. 21. 2006두20631)

☞ 통합행정법 298쪽 596쪽 참조

18.

해설 ④가 정답이다.

☞ 통합행정법 557쪽 참조

19.

해설 ②가 정답이다.

②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 통합행정법 253쪽 참조

20.

해설 ④가 정답이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2조). 정보공개심의회는 동법 제12조의 내용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한다.

☞ 통합행정법 338쪽 참조

통합행정법 판례특강

☞ 4월의 적중신화를 5월로 연결합시다!

일시 5월 4일(일요일)과 5월 11일
오후 2시 - 8시(6시간씩 2회)

수강료 2만원

강의 교재 - 특수판례자료집(3000원).
교재는 4월 30일 까지 출간.

강의특징

- 최근 시험이 행정법의 단편적 지식 보다는 전체적인 이해와 판례 및 실정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 2008년 4월 12일의 적중신화를 5월 24일에도...

통합행정법 김정우 선생

베리타스 M 고시학원 - 02 - 826 - 5700.

|